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7184
등록일자	2015.4.29.
결재일자	2015.4.30.
공개구분	부분공개(5)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경민	한문석	박선옥	04/30 김창현		
협조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5. 4. .

강 남 구
(사 회 복 지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질문과 심사) •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 및 일제 점검 추진 -장애인자립지원과-6216(2015.4.3.) •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점검 및 일제점검 계획 -사회복지과-14189(2015.04.09.)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활동지원 수급자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I 점 검 근 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질문과 심사)
-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 및 일제 점검 추진
 - 장애인자립지원과-6216(2015.4.03)
-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점검 및 일제 점검 계획
 - 사회복지과-14189(2015.4.09)

II 점 검 개 요

- 기 간 : 2015. 4. 16(목) ~ 4. 22(수)
- 대상기간 : 2014년 9월 ~ 2015년 4월(8개월)
- 점검대상 및 일정

연번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점검(예정)일
1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강남구 광평로51길 8, 401호(수서동, 로얄프라자)	3411-4664	2015.4.16(목)
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최미경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일원동)	459-6332	2015.4.16(목)
3	성모자애복지관	김은옥	강남구 현릉로757길 35(율현동)	3411-9581	2015.4.20(월)
4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강남구 개포로 613(개포동)	451-6000	2015.4.21(화)
5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역삼동)	518-2207	2015.4.22(수)

- 점 검 반 : 장애인복지팀장 외 2명, 국민연금공단 직원 1명
- 점검방법: 점검표에 따른 현장방문 실시

III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내용
활동지원 기관 운영실태	관리책임자, 전담인력의 자격충족여부 등을 포함한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내용 적합성 여부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급여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 보험 가입 여부확인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교육이수(현장실습 포함) 여부 등 인력관리의 적정성 확인
	수급자와 활동지원 기관(인력)간 계약서와 관련 부대서류(계획서, 급여일정표, 상호협력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급여제공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성 확인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부당청구여부	활동지원사업의 별도 회계 관리 여부 확인 등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수급자와 활동지원 인력(기관)의 담함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이상결제여부	활동지원 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소급결제 <input type="checkbox"/> 중복결제 <input type="checkbox"/> 심야결제 <input type="checkbox"/> 선결제 <input type="checkbox"/> 과다결제

IV 점검결과 총평

■ 제공인력관리

- 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전담인력,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배상보험 등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음.
- 활동지원 인력 자격·교육이수(현장실습포함)증 잘 관리 되고 있음
- 수급자와 활동지원 기관(인력)간 계약서와 관련 부대서류(계획서, 급여일정표, 상호협력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급여제공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 활동지원사업의 별도 회계 관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 부당청구 여부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수급자와 활동지원 인력(기관)의 담함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활동지원 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점검이 어려운 관계로 제공기관에 활동보조인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당부.

▣ 이상결제 여부

- 소급결제 시 제공지록지 작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V 행정사항

-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점검 결과보고. 끝.